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80 |
|----------|----|

제출년월일 : '99. 11. .
제출자 : 안산시장

제정이유

-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등으로 조성하며 시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함(안 제2조)
- 나. 기금의 용도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 및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지원함(안 제4조)
- 다.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안 제5조)

제정 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9조제5항

사전예고

- 예고기간 : '99. 11. 9 ~ '99. 11. 28(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3.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제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기획실장과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예술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술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제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①항(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①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837 |
|----------|-----|

제안년월일 : 2000. 2. 17.

제안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안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조성기간, 기금액, 연출연금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법개정에 의한 일부조항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은 2000부터 20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일반회계 예산으로 총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한다”는 규정을 둠.
- 안 제15조(기금결산) 제3항 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수정함.
- 안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항 중 “현금의 수입”을 “세계 현금의 수입”으로 수정함.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한다.

제15조(기금결산) 제3항 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으로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항 중 “현금의 수입”을 “세계 현금의 수입”으로 한다.

